**특허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**

**특허권자 000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**와 실시권자 주식회사 0000 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는 갑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 (목적)**

본 계약은 제2조에 기재된 갑의 특허권(이하 “본 건 특허”라 한다)에 관하여 을에게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고 을이 로열티를 지급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특허권의 표시)**

계약의 목적이 되는 본 건 특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|  |  |
| --- | --- |
| **특 허 번 호** | **발 명 명 칭** |
| 특제 호 |  |

**제3조 (계약기간)**

① 본 건 특허에 대한 을의 실시권은 **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한다.**

② 을이 계약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6개월 이전에 계약기간 연장의사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고, 계약만료일 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을이 정해진 기간에 계약기간 연장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써 본 계약은 확정적으로 종료된다.

**제4조 (실시권 설정 등록)**

갑은 을에게 설정한 본 건 특허 실시권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5조 (기술지원)**

을이 본 건 특허를 실시하여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갑에게 본 건 특허의 실시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갑은 이에 협력한다. 다만,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.

**제6조 (특허표시)**

을은 본 건 특허를 실시하여 생산한 제품, 포장, 카탈로그 등에 본 건 특허의 특허번호를 표시한다.

**제7조 (계량발명)**

을이 본 건 특허를 실시하는 중에 이에 기초한 새로운 발명을 하거나 기술을 개발한 경우 을은 이를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그러한 개발이나 발명에 대한 정보를 갑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며 그 권리를 갑과 공유하도록 한다.

**제8조 (로열티)**

①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실시권에 대한 대가로 갑에게 다음과 같은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한다.

1. **선급금 : 금 원을** 본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지급함.

2. **경상로열티** : 본 건 특허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·판매로 발생된 총매출액의 15%를 지급함.

② 경상로열티의 정산은 매년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을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로열티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고, 본 계약기간 만료연도에는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.

③ 을이 경상로열티를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그 당시의 갑의 주거래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적용한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**제9조 (로열티의 감액과 변경)**

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로열티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을의 감액청구가 로열티의 부당한 감액을 목적으로 함을 입증할 경우 갑은 을의 감액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.

1. 을이 본 건 특허를 실시하여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본 건 특허에 대한 실시 이외에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실시하여야만 하는 경우

2. 을의 기술지원 요청을 받고도 갑이 기술지원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시할 경우

**제10조 (기록의 보관 등)**

① 을은 계약기간 및 계약만료 후 5년 동안 본 계약에 따른 로열티 산정에 관한 회계자료를 보관하며 갑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갑에게 제출한다.

② 갑은 필요에 따라 갑의 직원 또는 갑이 지정한 공인회계사를 파견하여 로열티 산정에 관련한 을의 제반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.

**제11조 (특허의 관리)**

① 갑은 계약기간 동안 본 건 특허에 관한 관리의무를 부담한다. 만약, 을이 자신의 비용으로 본 건 특허의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경우 을은 그로 인한 비용을 갑에게 지불하는 로열티에서 공제할 수 있다.

② 제3자가 본 건 특허를 침해할 경우, 을은 자신의 비용으로 침해 배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이 경우, 갑은 을에게 침해 배제에 필요한 모든 협조를 제공한다.

③ 제3자의 침해로 인하여 배상받게 되는 손해배상금은 침해배제를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법률적 조치를 취한 당사자의 이익으로 한다.

**제12조 (특허권의 양도 등)**

갑은 계약기간 동안 본 건 특허를 포기하거나 타에 양도할 수 없으며, 법률상 기타 행정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할 경우 을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**제13조 (실시권의 양도 등)**

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을은 본 건 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실시 설정을 할 수 없다.

**제14조** **(비밀유지 의무)**

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타에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. 본 건 특허를 이용한 제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특허 등을 통하여 공개되지 않은 기술은 공지의 기술이 아닌 한 영업비밀로 간주된다.

**제15조 (계약의 해지 등)**

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 타방 당사자는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, 그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,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1. 갑이 본 건 특허의 실시권 설정행위를 완료하였음에도 을이 30일 이내에 실시를 포기한 경우와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

2. 을이 조업을 중단하여 상당기간 동안 조업이 재기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갑이 본 건 특허의 실시권을 성실히 부여하지 않은 경우

4. 본 계약상의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

② 을이 본 건 특허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경제성, 상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확정적으로 판단한 경우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을은 이미 지급한 선급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.

③ 을이 해산·청산·파산·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을의 대표이사가 그 소유 주식 및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본 계약서 관련 사업에서 벗어나게 된 경우, 본 계약에 의한 을의 실시권은 자동으로 소멸한다. 다만, 이 경우 을은 선급금을 포함하여 갑에게 이미 지급한 로열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
**제16조** **(불가항력)**

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화재·홍수·재앙·정부법령·폭동·반란으로 인한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나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그러한 불가항력에 처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즉시 가능한 상세사항과 향후 진전사항을 타방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, 원인이 제거된 직후 신속하게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**제17조 (계약의 수정)**

본 계약은 쌍방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 수정되지 않는한 수정·보정·정정될 수 없다.

**제18조 (기타)**

본 계약은 지금까지 양 당사자 간에 교환된 합의와 약정을 구체화한 것이며, 본 계약 체결 이전에 당사자 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모든 협의 또는 약정을 대체한다.

**제19조 (분쟁의 해결)**

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위 계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당사자가 각각1통씩 보관한다.

2018년 월 일

갑:

주소: 경기도 0000

성명: 000 (개인인감)

을:

주소: 경기도 0000

상호: 주식회사 000

대표이사 0 0 0 (법인인감)